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년 5월 4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5월 6일

라. 상정일자 : 2009년 5월 18일

제1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

나. 제안이유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으로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

라.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3조, 제237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배 정 미

○ 본 조례안은

- 지방세법 개정(2009. 2. 6)에 따라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으로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은

-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하였으며
- 또한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 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